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 5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삼일감사위원회센터가 선택적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306&menuNo=200218&cl1Cd=&sdate=2021-05-04&edate=2021-05-06&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1.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

■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新외감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

-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평가보고서는 작성 후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등의 징구를 통해 감사의 의무 이행 점검이 가능해졌으므로, 평가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는 비상장법인도 반드시 규정 준수에 유의할 필요

※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대표자(또는 감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분	舊외감법	新외감법 ('18.11.1 시행)
조항	제2조의2-3	제8조
적용대상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u>유한회사, SPC 등 제외</u>)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u>대표자</u> (내부회계관리자)
보고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u>주주총회</u>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u>문서화</u> 하고 <u>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u>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강화

- '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었으므로,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19년(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전체)

3.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정보 관련

-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22년(2조원 이상) → '23년(5천억원~2조원) → '24년(전체)
 - 상장지배회사는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회계정보**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을 준비할 필요

4.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 표명의무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5.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별임2 참조)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③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감사인: 감사보고서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6. 위법사실 재발 방지에 유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20/100 이내에서 가중

7.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등의 행위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신고대상에 해당 (일정요건 충족시 포상금 지급)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1. 과태료 부과 방법

-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부과금액을 결정

<과태료 부과 산식>

법정최고금액	X 예정비율 =	예정금액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태료 부과액
--------	----------	------	----------------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증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	•	•

※ **위반동기 판단기준**

(1) 상: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따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따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판단기준**

(1) 중대: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증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2. 과태료 면제 사유

- (회생절차진행 등) 위반당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임직원수 5명 이하)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기타) 조치시 폐업, 청산,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기준 4.가]

붙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I.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첨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table border="1"><thead><tr><th>보고일자</th><th>보고자</th><th>보고내용</th><th>보고대상</th><th>비고</th></tr></thead><tbody><tr><td>202x.3.17 (주주총회) 202x.1.28 (이사회) 202x.1.26 (감사위원회)</td><td>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td><td><이하 생략></td><td>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td><td></td></tr></tbody></table>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x.3.17 (주주총회) 202x.1.28 (이사회) 202x.1.26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이하 생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x.3.17 (주주총회) 202x.1.28 (이사회) 202x.1.26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이하 생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
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
되지 아니하였다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x.1.28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생략>	

※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xx년 xx 월 xx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xx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종합의견	<이하 생략>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예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II. 감사인: 감사보고서에 첨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보고서 작성 및 회사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는 xx주식회사의 xx년 xx월 xx일 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

<이하 생략>

※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
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